

학생지도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제예술대학교(이하 “우리대학”이라 한다)의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학생처장, 학과(부)장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제3조(회의소집)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자치활동 지도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2. 학생자치기구의 지도에 관한 사항
3. 기타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4조 (임무)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- ①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하고 위원장이 위촉한 업무를 처리한다.
- ② 위원은 위원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학생을 상담·지도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의 학생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- ④ 본 위원회는 학생회지도위원회의 기능도 겸한다.

제5조(의사 및 의결 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